

청주지방법원 2017. 6. 23 선고 2017가단445 판결 [무허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7. 6. 2

판 결선고 2017. 6. 2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청주시 청원구 C 대

192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,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주택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이 있는데 미등기로 1976년경 D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원고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, 원고는 2017. 5. 10. 위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5464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송인혁

별지